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. 5. 19 선고 2020가합10469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

담당변호사 임규영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4. 28.

판결 선고2020. 5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64,239,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3. 5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(제4.항의 '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'는 '2020. 3. 3.자
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'로 한다)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판사전재혁

판사김상헌

판사백장미

별지